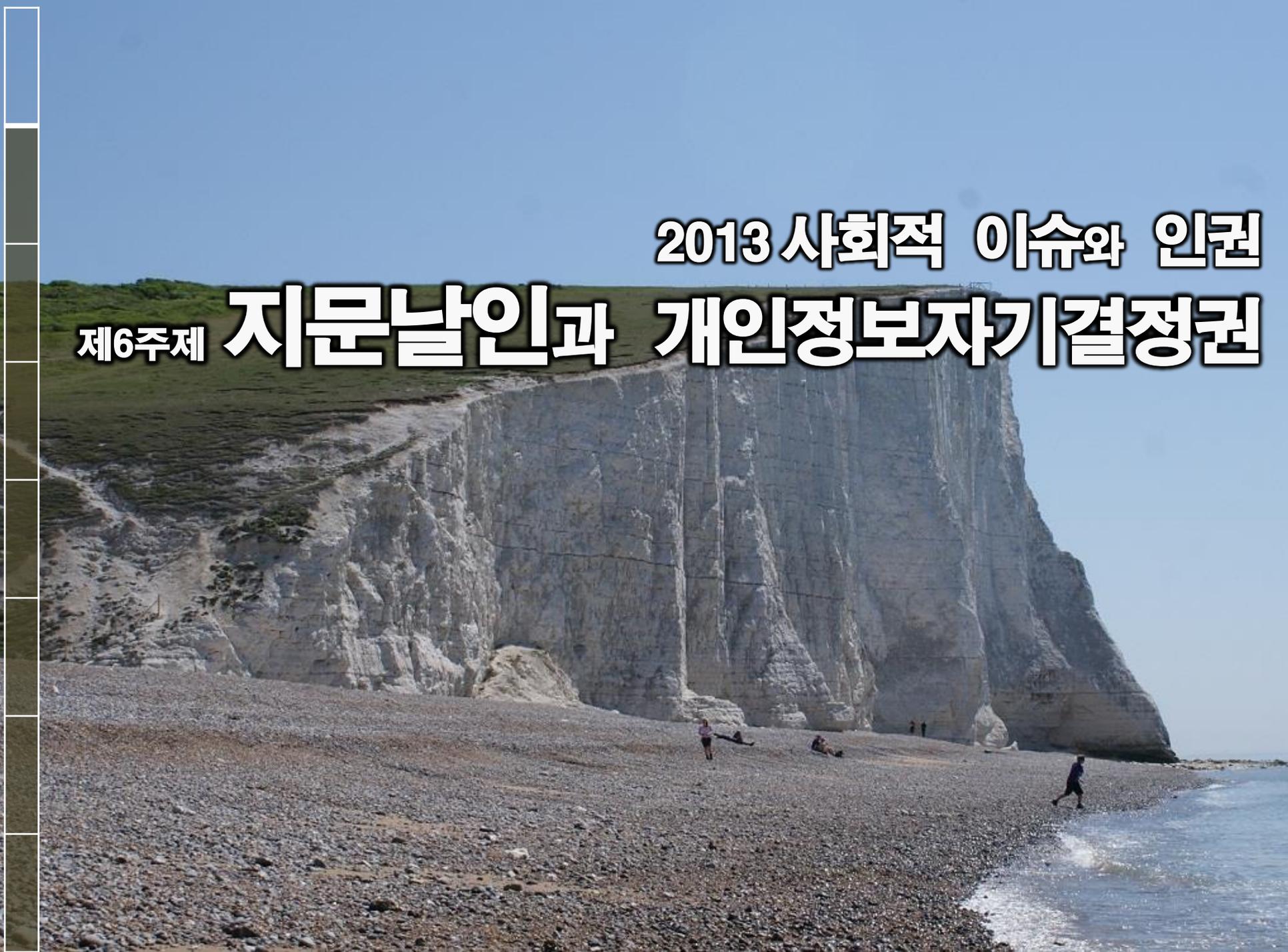


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

제6주제 **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**



## 문제제기

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 
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 
(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)

주민등록증에는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과 함께  
**지문을 수록**하도록 규정  
(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)



## 지문날인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지문 → 개인정보 식별



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은

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

헌법 제17조

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## 지문날인에서 **문제**가 되는 **인권**

### 1.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

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

비밀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

### 2.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

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유와 방어권 및 절차권

개인정보자기결정권

#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

## 1. 근거법률의 존재여부(법률유보원칙 관련)

근거법률이 존재한다는 견해

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

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(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대체)  
**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 (중략)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
 할 수 있다.**

**7.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
경찰법 제3조(국가경찰의 임무) ·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(직무의 범위)  
**치안정보의 수집 · 작성 및 배포**

#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

## 2.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

### 긍정하는 입장

- ① 전과자 지문정보로는 불충분
- ② 엄지손가락으로는 불충분

### 부정하는 입장

- ① 전과자 지문정보로 충분
- ② 엄지손가락으로 충분
- ③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

헌법재판소의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(헌재 2005. 5. 26., 99헌마513등)

### 1. 목적의 정당성 / 수단의 적합성

신원확인기능의 효율성, 정확성, 완벽성

### 2. 피해의 최소성

다른 여러 신원확인 수단(홍채인식 등) 중에서 지문정보에 비견할 만한 것이 없음

### 3. 법익의 균형성

범죄수사활동, 대형사고의 변사자 신원확인, 인적사항 도용방지 등의 공익이 우월

##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**법제의 필요성**

· 국가 또는 개인의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

·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통일적  
인 법제의 필요성 - 2011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정

· 개인정보의 보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  
개인정보 보호위원회(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)  
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

# 토론

1. 왜 국가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원하는가?
2. 국민의 생체정보에 대한 수집은 어떠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가?